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재지정 금지 기간 명시〉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10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재지정 금지 기간 명시(안 제24조제2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1. 8.

다. 회 부 일 : 2026.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III. 검토의견

1.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재지정 금지 기간 명시(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u><신 설></u>	○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2년 이내 재지정 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 <u>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 금지</u>

현행법은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¹⁾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3.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4.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5.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6.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현재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e-발주시스템, 조달정보시스템, 공공혁신조달플랫폼 등 조달정보시스템의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와 조달 관련 대외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결격사유 규정이 미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던 기관이 단기간 내에 다시 지원센터 지정을 받고자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공조달 지원 업무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지정을 차단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며, 제한 기간도 다른 법률에 비해 과도해 보이지 않으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전자조달 행정 지원 업무의 공정성 및 대외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지원센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외국 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등 고도

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운영 주체의 도덕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임.

개정안은 부정행위 기관의 시장 재진입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지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둘째,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제한을 두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공공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공공 사무를 대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현황]

법률명	조문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개정안은 제재 대상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 위반 주체인 대표자나 임원에 의한 우회 등록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철도안전법」은 운전성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그 기관의 설립·운영자 및 임원이 설립·운

영하는 검사기관까지 재지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해양교육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면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 지배주주의 명의 대여나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변칙적 시장 재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음.

[재지정 제한 대상을 ‘대표자 및 임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입법례 현황]

법률명	조문내용
「철도안전법」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운전적성검사기관이나 그 기관의 설립·운영자 및 임원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원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이 기관 명의에만 국한될 경우, 동일한 인적 구성에 명의만을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한 대상을 해당 기관의 대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생략) <u><신설></u>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

문의처

02)6788-5152